

##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

제정 2013. 3. 1.    개정 2013. 11. 15.  
 개정 2014. 3. 1.    개정 2014. 7. 25.  
 개정 2017. 5. 2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대학” 라 한다) 전임교원 주당 책임시간 및 초과수당을 책정하여 전임교원 연구활동에 원활을 기하며,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 강의하는 경우에 초과강의료 기준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전임교원의 책임시수)**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. 단, 특수한 학문분야 연구 등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5.23.>

② 보직교원의 기준시간은 전1항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괄조정본부장, 각 처·단장 : 1시간 이상 <개정 2013.11.15., 2014.7.25.>
2. 실장 : 4시간 이상 <개정 2014.7.25.>
3. 학부(학과)장, 디지털정보센터장, 전산정보센터장, 평생교육원장 : 9시간 이상
4. 평교수 : 9시간 이상 <개정 2017.5.23.>

③ 전항에 규정한 교원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3조(초과강의 제한)** 강의시간은 다음에 의한 시간 수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하여 담당시간을 초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7.5.23.>

구 분	전 임	겸임 및 외래강사(주당)
시 수	책임시수 + 9시간	- 겸임 : 9시간이내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18시간이내까지 강의 가능 - 외래강사 : 총 강의시간 20시간까지 강의 가능

**제4조(초과강의료 지급)** 초과강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초과강의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실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2. 초과강의료는 학년도별 예산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초과강의료 및 외래강의료 지급 여부)** 초과강의료 및 외래강의료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번호	지급내역	지급여부	
		겸임 및 외래강사료	초과강의료
1	국경일	지급	보강 지급
2	천재지변	지급	보강 지급
3	교내행사(입학식, OT, MT, 체육대회, 축제 등)	지급	보강 지급
4	시험기간	지급	수업시간에 의한 계산
5	학과행사	지급	보강 지급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